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155

발의연월일 : 2021. 12. 29.

발 의 자:정희용・김석기・지성호

金炳旭・추경호・김용판

송언석 · 김희곤 · 최춘식

이채익 · 김영식 의원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안전상비의약품의 용기와 포장 등에 점자 표시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장애인의 이용편의성 및 접근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점자는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는데, 현행법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시각장애 학생의 실정에 맞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에 관한 규정은 없어 이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시각장애 학생의 점자사용능력을 증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하는 동시에, 점자를 배우려는 사람들을 위하여 교육과정 및 교재를 개발·보급하려는 때에는 전문인력 및 시각장애인으로 구 성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의 점자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도 록 하는 등 점자교육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제1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점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제11조의2에 따른 점자전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은 시각장애인 학생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점자사용능력을 증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을 위하여 공공기관등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점자 관련 법인·단체를 점자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1조의2(점자전문위원회) ① 점자교육, 점자의 사용과 보급 등에 필요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제18조제1항에 따른 점자 관련 전문인력 및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되는 점자전문위원회를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점자전문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점자교육의 기반조성) 문	제11조(점자교육의 기반조성) ①
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부장	
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점자를 배우려는 사람들을 위	
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	
·보급하여야 한다. <u><후단 신</u>	
<u>설></u>	11조의2에 따른 점자전문위원회
	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u><신 설></u>	② 교육부장관은 시각장애인
	학생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활용할 수 있도
<u><신 설></u>	록 점자사용능력을 증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u>한다.</u>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
	의 사용 촉진 및 보급을 위하
	여 공공기관등 및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점자
	관련 법인·단체를 점자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u><신 설></u>	제11조의2(점자전문위원회) ① 점
	자교육, 점자의 사용과 보급 등

에 필요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제18조제1항에 따른 점자 관련 전문인력 및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되는 점자전문위원회를 둔 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자전문위원 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